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22 선고 2023가단5171464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조합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

변 론 종 결 2024. 3. 25.

판 결 선 고 2024. 4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 9,000,000원, 선정자 E조합에게 13,000,000원, 선정자 F조합에게 9,000,000원, 선정자 G조합에게 17,000,000원, 선정자 H조합에게 15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. 3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은 2021. 8. 11.1) 소외 I 주식회사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(이하 ‘이 사건 대출약정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○ 대출원금 (총 145억 원)

- 원고(선정당사자): 21억 원

- 선정자 E조합: 30억 원

- 선정자 F조합: 20억 원

- 선정자 G조합: 38억 원

- 선정자 H조합: 36억 원

○ 대출일: 2021. 8. 13. ○ 최종상환기일: 2023. 2. 13.

○ 약정이자: 연 6%, 지연이자: 연 9%

나. 소외 회사가 2023. 3. 29.자 기준으로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출원리금 채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.

○ 원고(선정당사자): 대출원금 21억 원 및 이자²⁾ 104,841,104원

○ 선정자 E조합: 대출원금 30억 원 및 이자 148,739,649원

○ 선정자 F조합: 대출원금 20억 원 및 이자 100,179,952원

○ 선정자 G조합: 대출원금 38억 원 및 이자 189,030,986원

○ 선정자 H조합: 대출잔여원금 3,303,750,000원 및 이자 141,325,903원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4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(일부청구)

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 중 잔여대출원금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금액 및 이에 대한

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3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잔존하는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,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여대출원금 중 일부로서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 9,000,000원, 선정자 E조합에게 13,000,000원, 선정자 F조합에게 9,000,000원, 선정자 G조합에게 17,000,000원, 선정자 H조합에게 15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상환기일 이후로서 원고(선정당사자)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3. 3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(선정당사자)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안현진

별지

- 1) 선정자 G조합은 2021. 8. 13.자로 체결
- 2)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의 합산액, 이하 같다